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6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0. 11. 16.(월) 14:32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김 현 부위원장 (1인)

제6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2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 현 부위원장께서는 국회 출석으로 인해 불참하셨습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6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7차, 제58차 및 제59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60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4-2. 국회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 의결

○ 한상혁 위원장

- 국회에서 2020년도 제57차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비공개 회의록 및 속기록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개인·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로 진행한 「매일방송 행정처분 관련 의견청취 건」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그간의 선례를 참고하여 해당 개인·법인의 인적 사항이나 발언 위원의 성명 등을 음영처리한 후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자료제출을 의결합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방송정책국, 방송기반국, 이용자정책국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라디오방송국(FM) 변경허가에 관한 건 (2020-61-264)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라디오방송국(FM) 변경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라디오방송국(FM) 변경허가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재)극동방송의 극동창원FM방송국에 대해 변경허가를 의결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향후 라디오방송국(FM) 송신소 이전 및 이에 따른 경미한 방송구역 변경허가에 관한 건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기로 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재)극동방송의 극동창원FM방송국 변경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현황입니다. 극동창원FM방송국 송신소 주소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 산155번지 불모산에서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산24번지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8월 13일 송신소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고, 10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술심사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과기정통부 기술심사 결과입니다. 극동창원FM방송국의 송신소 이전설치에 따른 기술심사 결과 지역별 방송면적률은 모두 방송 기준을 만족하고, 동일·인접채널과의 간섭 분석 결과, 혼신면적률 10% 이하로 현행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밀양지역의 경우 방송면적률이 52.1%로 분석되어 일부에서 일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극동창원FM방송국은 KT 첩탐을 활용하여 송신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안전도 검사 결과 KT 탐을 철거할 예정임에 따라 송신소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송신소 이전 및 이에 따른 방송구역 변경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기술심사를 충족하였으므로 극동창원FM방송국의 송신소 이전에 대해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희망 방송구역인 밀양 지역은 일부에서 일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극동창원FM방송국 변경허가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송신소 주소지 변경과 함께 방송구역에서 일부에 명기되어 있던 밀양시를 일원 항목에 이동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이달 중으로 변경허가증을 교부하겠습니다. <붙임>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결과 (재)극동방송의 방송국 운영현황,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과기정통부 기술심사를 반영해서 밀양지역의 방송구역을 일원으로 변경하는 사무처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저도 변경허가에 동의합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0-61-265)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방송광고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주)아이에이치큐에게 동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이하에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을 ‘미디어렙법’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미디어렙사’로 약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입니다. (주)에스비에스엠엔씨의 주식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주)아이에이치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주요경과입니다. ‘20년 6월 24일부터 7월 22일 사이 SBS M&C 재허가 심사 시 SBS M&C 주주의 소유제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년 7월 13일에서 7월 24일 사이에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어렙사 소유제한 관련 규정입니다. 미디어렙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광고대행자 또는 그 특수관계자는 미디어렙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렙사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분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 동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자 현황은 안건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반사항입니다. (주)아이에이치큐는 업종에 광고대행업을 등록하고 (주)JTBC미디어컴과 방송광고를 거래하였고, (주)아이에이치큐의 특수관계자인 (주)딜라이브는 (주)TV조선미디어렙, (주)엠비엔미디어렙에 방송광고를 거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아이에이치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대행자이자 광고대행자 (주)딜라이브의 특수관계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의거하여 광고판매대행자로 허가받은 SBS M&C의 주식을 소유하여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대행자의 광고판매대행자 주식 소유제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처리방안입니다. 피심인은 미디어렙법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해당주식 처분 또는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위반사항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디어렙법 제13조제6항에 의거 6개월 이내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20년 11월에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21년 5월에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특수관계인 미디어렙 소유주 관계인데 보고에 보면 해당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해당주식을 처분하거나 정관변경을 통해 위반사항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정관을 어떻게 변경

하겠다는 것이지요?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현재 정관에서는 광고대행업으로 되어 있는데 광고대행업에서 방송광고대행업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방송광고대행업을 하지 않겠다?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방송광고대행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지요?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그 기간은 저희가 정해 주는 것이지요?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저희가 법에 따라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시정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본인들은 이 부분을 알았다고 합니까?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고, 뒤늦게 저희가 SBS M&C 재허가 심사를 하면서 소유제한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십니까?

○ 김효재 상임위원

- 예.

○ 안형환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 원안 동의되었는데 의결주문이 그대로 나갈지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문에 시정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소유제한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의결주문이 나가도록 정정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금 자구 수정이 조금 필요한 경우니까 이 부분은 그 취지를 반영해서 자세한 문구는 위원장 및 사무처에 위임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0-61-266)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0-61-267)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으로 <의결안건 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과 <의결안건 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은 ‘N번방’ 후속조치 관련 정부입법 추진에 관한 사항이므로 2개 안건을 묶어서 보고를 받고 함께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인터넷윤리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붙임 1>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가 의결 주문입니다. 다음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6월 9일에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를 확대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세부 시행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경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과 9월에 입법예고안을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3일에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개최하였고, 원안 동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명시한 바 있고, 신고·삭제요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절차를 규정한 부분이 신설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부분에서는 지난번 입법예고 때도 보고드렸던 부분처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국가·지자체로부터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관련 사업비를 보조받아 관련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단체로서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포함되었습니다. 신고 서식은 저희가 별지로 '신고·삭제요청서'라는 서식을 신설하였고, 이 해당 서식과 해당 서식의 내용을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이 서식에 따라 신고·삭제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 신고·삭제요청을 접수 받고도 판단이 곤란한 경우 삭제요청을 받은 부분을 방심위에 심의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심의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없이 삭제·접속차단 조치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재입법예고 이후 특별하게 수정된 사항은 자구나 체계 수정 이외에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별지 서식에서 '기타' 사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타 사유라는 부분은 저희가 대상 정보로 한 부분이 법에 의거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기타 사유 부분은 삭제하고 의견조회 기간에 들어온 부분처럼 방심위의 판단이 어려워서 전달될 수 있을 때는 신고인 정보가 같이 전달됨을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는 입법예고 때 보고드렸던 것처럼 대상자의 범위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와 연매출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이나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플랫폼 서비스 등의 유형을 시행령에 명시해서 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입법예고 후 주요 자구나 체계 수정 부분으로 조항을 분류하거나 별표로 만든 것 이외에는 해당 내용에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문체부에서 저희가 제외대상에 신문 등의 사이트를 제외대상으로 했는데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부분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을 수용해서 제외대상 부분에 같이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내용과 그것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은 4가지 사항이 되는데 상시적 신고기능, 금칙어를 통한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부분과 필터링을 통한 게재 제한 부분, 처벌사항을 고지하는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하였습니다. 필터링 조치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재입법예고 이후 관련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세부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자구나 항을 분리하는 정도의 체계 수정이 있었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능평가 부분이 별도 항으로 있던 부분이 필터링 조치 부분에 같이 포함된 부분이 있었고, 성능평가의 적용유예기간을 1년 6개월 부칙으로 두었던 부분들이 삭제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시행되는 시기인 '21년 12월 10일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방지 조치의무 위반 시 과징금의 산정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안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 으로 신설되는 내용이 있었고, 이 내용 안에서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매출액으로 한다는 내용과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 각호로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1호, 2호로 분리해서 해당 내용을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징금의 기준금액 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보통 위반행위로 과징금 기준금액을 차등산정하고, 가중·감경 부분은 기준금액의 50% 이내에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치고, 유통방지 노력 정도나 조사에 협조하는 여부 등을 고려하여 50% 범위 내에서 추가적 가중·감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징금 고시 부분으로 시행령에 명시되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자구 및 체계 수정 이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특별하게 재입법예고 이후 수정사항은 없고 자구 및 체계 수정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이 의결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10일 시행일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있어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붙임 1>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마찬가지로 6월 9일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이나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세부 시행을 위해서 오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추진 경과를 거쳤고,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삭제 및 개선권고가 나온 사항이 있어서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대상사업자의 범위와 동일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와 연매출 10억 이상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중 저희가 유형별로 정의했던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유형이 지정의무자 범위로 지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입법예고 후 주요 수정사항은 동 사항의 내용에서도 특별하게 자구 및 체계 수정 이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와 자격요건, 책임자에 대한 교육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토록 되어 있는데 1명 이상 지정해야 하고, 지정의무자 소속 임원 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하면서 2시간 이상의 방통위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이수토록 규정한 부분에서 원격교육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주에 있었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권고사항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입법예고 기간에는 유통방지 책임자가 교육 이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대리인 지정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원격교육이 포함되는 부분이 개선권고로 나오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대리인 지정을 허용하는 조항은 삭제권고 의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대리인 지정 허용 조항은 삭제하고 원격교육을 포함하는 부분으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와 책임자를 미지정하였거나 투명성 보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입법예고 때 주셨던 내용에서 자구 및 체계 수정 이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결사항>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은 '방통위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법제처에서는 법에 다른 기관을 지정하는 부분보다 방통위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직접 실시하도록 하기 때문에...

○ 김효재 상임위원

- 방통위가 하는 것입니까?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저희가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 내용을 짜고 2021년부터는 실시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내년부터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예, 그렇습니다. 내년 중에 교육을 이수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 것으로 예측됩니까?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지금 대상사업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유형별사업자와 10억과 10만명 이상의 가입자 수를 해서 12월까지 시행 전에 저희가 지정대상을 지정하는 방식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함께 협조해서 알려 주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업자 개수를 추산할 예정인데 통상 70여개 사업자 내외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70여개 사업자, 한 사업자당 1명이라면 70여명으로 100명 이내 대상이 됩니까?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예, 맞습니다. 지정 명수는 조사를 거쳐 사업자들 해당 확인사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확정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 숫자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까?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교육 내용은 법령에서 명시된 바 있습니다. 즉,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판단하는 심의기준의 내용이라든가 관련법에서 유통방지 노력을 위해 해야 할 조치 등을 4가지 호로 정한 내용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평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 사유는 방송사 간부직의 성별비율과 흡쇼핑 민원 피해구제 비율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추진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3> 개정 사항입니다. <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 중 (1) 양성평등 관련입니다. 현행규정에서는 「여성 고용 평가」 항목에서 여성 고용 비율만 평가하며, 배점은 10점입니다. 개정내용은 방송분야의 양성평등 촉진 등을 위해 현행 「여성 고용 평가」 항목에 ‘여성 간부직 고용비율’을 신설하는 것으로, 방송사의 「여성 고용 평가」 항목 배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10점으로 유지하고 ‘여성 고용 비율’ 7점, ‘여성 간부직 고용비율’을 3점으로 배점하는 것입니다. (2) 흡쇼핑 민원 피해구제 관련입니다.

현행규정에서는 「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 항목에서 ‘한국소비자원의 구제 조치 사항 건수’를 평가하며, 배점은 30점입니다. 개정내용은 홈쇼핑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노력 유도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 항목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조치 건수’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비율’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배점은 동일하게 30점입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안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 「방송평가 세부기준」 개정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는 「방송법 시행령」,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방송평가 세부기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세부기준의 항목과 배점의 변경 및 현행화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것은 먼저 여성 고용 관련하여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의 「여성 고용 평가」 항목에 ‘여성 간부직 고용비율’이 신설됨에 따라 여성간부 비율 평가 기준·배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소비자원 민원 관련하여 평가척도를 ‘홈쇼핑 구제조치 건수’에서 ‘홈쇼핑 피해구제 비율’로 변경하고 피해구제 비율에 따른 점수를 명시하며, 공익광고 관련해서는 「방송법 시행령」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고시」 개정 사항인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 및 의무편성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방송 관련하여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항목 중 평가방식만 규정된 세부항목의 배점기준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4>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만 보고를 마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방송국의 여성 고용 현황과 여성 간부직 고용현황이 조사되어 있는 기초자료가 있습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간부 현황은 없습니다만 여성 종업원에 대한 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동안에는 여성 종업원만 평가했는데 앞으로는 여성 간부직 고용비율도 보겠다는 것이지요?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아직 조사된 것은 없지요?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없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참고로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여성 간부직 고용비율을 정할 것인가 위원들끼리 협의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여성 고용 비율을 7점으로 하고, 여성 간부직 고용비율은 3점으로 배점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간부직의 기준이 팀장 이상입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공식 직제상에 있는 간부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뒤에 세부기준 개정안에 보면 '여성 간부 기준은 기관 공식 직제상의 부서장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저는 이의 없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나>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윤리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에서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 세부기준 등을 고시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아래 <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위임사항을 간략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추진 경과는 앞에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망법 시행령 부분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안)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징금 산정절차와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을 안 제2조와 제3조 내용으로 담아 넣었습니다. 과징금 산정절차는 제정이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기준금액에 대해 필수적 가중·감경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산정절차이고, 이런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기준매출액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으로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매출액 산정할 때 서비스의 범위는 서비스의 종류나 성질 내지는 제공방식·가입방법 및 이용약관상의 범위, 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 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자료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회계자료를 통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과거 실적이나 동종 유사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토록 고시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및 기준금액의 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시의 제4조와 제5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앞에 시행령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의 이득 취득여부나 유통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보통의 위반행위 이렇게 3단계로 판단하고 고시안에 [별표 1]을 신설해서 6개 항목, 즉 이득발생의 정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영리목적의 유무, 신고·삭제요청 등의 횟수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규모 등 6개 항목을 상·중·하로 평가하여 합산한 위반점수를 토대로 해서 총점의 80% 이상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50~80%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 50% 미만은 보통의 위반행위로 구분하였습니다. 기준금액 산정에 대한 부분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서비스의 매출액에 말씀드렸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부분으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필수적 가중·감경과 추가적 가중·감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산정된 기준금액에 대해,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필수적 가중·감경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3년간 위반행위가 없었던 경우에는, 즉 위반횟수가 0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에서 50%를 감경하고, 위반행위가 3년간 1회 존재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위반행위가 2회 이상 존재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에서 50% 가중하여 50% 이내의 가중·감경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 가중·감경입니다. 유통방지 노력 정도와 점검 협조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에서 50% 범위 내 가중·감경을 거칠 수 있는 추가적 가중·감경에 대한 부분을 [별표 2]로 포함시켰습니다. [별표 2]의 내용은 고시안에 같이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보고 이후 고시 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를 다시 한번 거친 후 관보에 게재하면 과징금 고시안이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2페이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및 기준금액의 산정 부분을 보니까 평가항목/비중에서 피해의 정도도 20%, 피해회복의 정도도 20%인데 피해를 어떻게 회복하게 했는지, 그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높은 점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저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5%만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책정되었는지 혹시 보충설명이 가능합니까?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붙임> 6페이지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에 대한 6개 항목의 <표>를 첨부해 드렸는데 일단 가장 크게 본 부분은 해당 사업자, 즉 조치의무대상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가장 높은 비중의 점수를 주는 부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규모는 해당 서비스의 당해 조치의무사업자 이외 다른 조치의무사업자에게도 퍼진 부분을 고려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해당 서비스에서 다른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퍼져 있는 정도에 대한 책임은 이득을 취한 것보다는 적은 비중으로 평가항목에 포함시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이트에 퍼져 있는 부분은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참고해서 산정할 수 있으나, 예를 들면 5개 이상 조치의무사업자의 서비스에 유통된 경우에 대해서 A라는 대상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퍼져 있는 부분을 고려하는 부분의 비중을 그래서 낮게 책정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김효재 상임위원

-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이번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또 여기에서 의결한 정보통신망법과 관련된 고시인데 그동안 N번방 사건 이후 논란이 있었던 시행령이었습니다. 임시차단조치라든지 조치의무대상자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됐었는데 어찌됐든 입법예고 이후 접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한 최종안이 됐고, 또 이번 고시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들을 해소해서 입법예고 시 우려됐던 의견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무처에서 이번 시행령 및 고시 마련 절차를 잘 마무리해서 향후 원활한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붙임> 별표 1 고시안 세부평가 기준표를 아주 상세하게 세분화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침익적 처분행위의 경우에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내지는 수범자가 금지하는 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세분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침익적 조치 행정처분의 대상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수범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처음 이런 세부기준안을 만들어 놓은 정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불법촬영물등의 피해 정도를 보면 '이용자의 신체·재산상 피해'라고 했는데 그것뿐입니까? 결국 궁극적인 것은 인격권, 명예권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체·재산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에 명예에 대한 피해, 인격권 침해 이런 부분도 포함·포섭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일단 불법촬영물과 불법편집물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대상 정보이지 않습니까? 삭제 신청요청을 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위반행위로 피해정도를 신체·재산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로 규정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포함된 의미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기왕이면 명확하게 '인격권'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예,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신체·재산상 피해라고 하면 직접적인 상해를 당한 경우로 한정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니 인격권 침해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문구수정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세부평가 기준표에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6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11분 폐회 】